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운영 안내

1. 관련 법규정 및 공문

-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
-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다. 교육부고시 제2021-31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4항
- 라.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교육실습)
- 마. 「수업 관리 내규」 제19조(학교현장실습)

2.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4주실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대상 학생** **은 반드시 수요조사(강의지원시스템(LMS) 비정규과목 설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1) 사범대학: 2024학년도 1학기에 7, 8학차 이상 재학생
- 2) 교직과정: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7, 8학차 이상 재학생
- 3)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5, 6학차 이상 재학생

나. **학교현장실습 기간: 2024. 05. 06.(월) ~ 31.(금) <4주간>**

- 다. 학교현장실습 업무 처리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교현장실습	실습생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학번, 주소, 연락처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3조

라. 연고지 신청 안내(학생이 직접 실습학교 발굴)

1) 연고지 신청 절차

- ① 학생이 실습학교의 구두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장선생님 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함.

※ 무학중·고등학교와 추가 협의한 결과, 2024학년도에도 별도 연고지 신청
없이 협력학교신청만으로 실습 배정 예정

- ② 학생이 직접 강의지원시스템(LMS) 수요조사(비정규과목 설문)에 실습 학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학교명, 학교 주소(도로명), (승인확인용) 교사명, (승인확인용) 교사 연락처

※ 수요조사 기간 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별도 추가 안내하지 않음)

- ③ 소속 학과에서 실습학교에 승인 여부 전화 확인
 ④ 학과에서 승인 확인 완료된 명단을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우리 대학교 총장 명의 실습 의뢰 공문을 실습학교에 전자문서로 발송
 ⑤ 실습학교의 실습 수락 공문이 전자문서로 회신되면 실습학교 배정 완료
 ⑥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실습학교에서 안내한 일정 내에 제출

2) 연고지 신청 일정 ※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조사(학생): 2023. 11. 30.(목) 09:00 ~ 12. 06.(수) 17:00
- 소속 학과에서 수요조사 결과 확인: 2023. 12. 11.(월) ~ 15.(금)
- 실습학교에 실습 의뢰 공문(실습생 인적사항 포함)을 전자문서로 발송: 2023. 12. 29.(금)까지

3) 준비서류: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제출처: 실습학교(제출 일정은 실습학교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일정에 따르면 됨)

마. 협력학교 신청 안내(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 일괄 배정)

1) 협력학교 신청 절차

- ① 학생이 직접 수요조사(LMS 비정규과목 설문)에 ‘협력학교 신청’ 응답
 ② 공지된 협력학교 신청 기간에 **학생지원포털-학적/졸업-교직-협력학교 신청**에서 배정 희망 순위 신청
 ③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실습학교에서 안내한 일정 내에 제출

2) 신청 기간

- 수요조사: 2023. 11. 30.(목) 09:00 ~ 12. 06.(수) 17:00
- 희망학교 순위 신청: **2023. 01. 11.(목) 09:00 ~ 15.(월) 17:00**

3) 협력학교 배정 방법

- 직전 학기(2023-겨울학기 제외)까지의 성적순(실점 기준)으로 선발
-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협력학교 요청사항과 실습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습학교 배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실습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희망 우선순위는 임의 배정 처리(별도 추가 안내 없음)

바.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관련 추후 일정

- 1) 실습학교 배정결과 확인
 - 확인 기간: 2024. 02. 05.(월) 이후(예정)
 - 학생지원포털-학적-교직-학교배정결과확인PG에서 확인 가능
- 2)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전체): 일자 및 장소 추후 안내(3월 말)
- 3) 학과별 사전 교육: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사. 유의사항

- 2024-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야 함.
- 교육학, 사회 계열 등 협력학교 배정이 어려운 표시과목의 경우 연고지 신청을 권장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하며, 해당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아.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